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9 선고 2014가합202543 판결 [법인격부인에 기한 구상금청구]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15. 4. 21.

판결 선고 2015.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39,369원 및 그 중 200,684,212원에 대하여 2009. 9. 25.부터2009. 12. 2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계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대표이사인 C와 그 배우자인 이사 D은 원고에 대하여 B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09. 8. 21. 폐업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금융기관들에게 B의 연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404538)에 B, C,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8.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302,185원 및 그 중 203,300,794원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09. 12. 2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선행 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2010. 5.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B 측으로부터 2011. 6. 22. 2,576,074원(=26,377원 + 2,549,697원), 2011.12. 30. 38,870원, 2012. 6. 19. 1,638원 합계 2,616,582원을 회수하였다.

마. 피고는 B가 폐업하기 직전인 2009. 8. 18. 시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B의 소재지에서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의 대표이사 C가 B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그 회사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B와 피고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53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 203,302,185원 및 그 중 203,300,794원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09. 12. 2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위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회수한 돈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309,353,576원[= 원금 203,300,794원 + 변제충당된 이후 나머지 이자 106,052,782원(2009. 9. 25.부터 마지막 변제일 2012. 6. 19.까지)] 및 그 중 203,300,794원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E, F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가 폐업하기 직전 B의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B의 직원들(E, G, H)이 대부분 그대로 근무하였으며, B의 전화번호(I)와 팩스번호(J)를 그대로 사용하고, B의 주요 거래처(K 매점, L 매점, M 매점)를 그대로 넘겨받은 점, ② 피고는 다수의 채용정보 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올리면서 B의 설립일과 연혁 및

브랜드를 자신의 것으로 소개하고, B와 동일한 홈페이지(N),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그대로 기재한 점, ③ B의 실질적 소유자인 C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기도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채용정보나 홈페이지 관리는 C의 배우자인 D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O는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O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E은 B의 직원이었던 점, ⑤ C는 B의 국내 영업활동 및 구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E과 O에게 위임하면서, 브랜드(P, Q, R)에 관한 업무, 계약업무, 총판 및 판매업무에 대해서는 C의 허락을 받도록 한 점, ⑥ D은 2009년 B의 대표로 홍콩시계박람회에 참가하였는데, 2011년과 2013년에는 피고의 대표로 서위 박람회에 참가한 점, ⑦ B가 폐업한 이후에 B나 C가 B의 직원이었던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나 O·E이 B나 C에게 위와 같은 영업이전 등에 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는 C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B가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B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피고에게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39,369원 및 그 중 200,684,212원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09. 12. 2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범, 판사 최호진, 판사 이이영